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및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종모회사”를 “최종모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내법인이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국내법인이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 중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을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의 조직형태 변경이 아닌”으로 한다.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종모회사(이하 “최종모회사”라 한다)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의 국내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 후에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외국 지주회사가 국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9조제2항제3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
다.

제80조제1항제1호에 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6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8의6.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적용할 때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60까지 투자하는 행위

제80조제1항제9호의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
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제8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각 목의 사유로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의 투자비
율을 위반하게 된 경우: 잔여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가.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평가가격이 변동한 경우

나.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자산
을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기간 중인 경우
제81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1년

제2편 제4장 제2절 제2관에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의 제한 및 예외 등) ①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
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2. 시장상황에 따라 제81조제4항제1호의 기간 내 제241조의2제1항의
투자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주투자대상기업에 추가 투자하는 것이 투
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제9항의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비율을 위반하게 된 경우

②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2.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 제4항의 투자한도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제9항의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2년

3.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자산을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기간 중인 경우: 잔여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③ 법 제8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비상장법인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다.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

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나. 법 제379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으로서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투자일 전날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한다)이

2천억원 이하인 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으로서 투자를 완료한 것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나.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라.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투자조합

마. 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4. 그 밖에 원활한 자금공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

④ 법 제8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⑤ 법 제8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법 제81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⑦ 법 제81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란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⑧ 법 제81조제5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인 금융기관의 발행어음
4.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인 거래상대방과의 환매조건부매수

⑨ 법 제81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평가 결과를 기초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투자심의위원회가 성장가능성,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2호 각 목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외부평가 결과 없이 평가할 수 있다.

⑩ 법 제81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3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출자지분 및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투자한도 또는 제8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전 대여 한도 및

기준을 회피하는 행위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조합 등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조합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조합 등의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제83조제4항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⑥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계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목적·한도 등을 포함한다)을 정하고 있을 것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85조제3호가목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1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17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주회사”로 한다.

제241조제1항제1호라목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5편 제3장제1절에 제2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2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제81조의2제3항제1호·제2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금전 대여
2. 제81조의2제3항제1호·제2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매입
3. 제8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조합 등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증권(채무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

③ 제1항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투자금액은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포함한다.

1. 제81조의2제3항제2호나목의 법인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투자
2. 제81조의2제3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에 대한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

④ 법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⑤ 법 제22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5년 이상을 말한다.

⑥ 법 제22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300억원을 말한다.

⑦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다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모집가액이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한하여 100분의 1을 말한다.

⑧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한다.

1. 5년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⑨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60조제1항의 방법을 말한다.

⑩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제260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에 한 번 이상 해야 한다.

⑪ 기업성장집합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기업성장집합투자회사(각각 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발생일의 다음 날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자산(조합 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내역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조합 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
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해 금전을 대여한 경우 그 사실

⑫ 법 제2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설정·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제4항의 기간 내에 그 모집가액이 제6항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해지·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해산의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법 제192조 및 법 제202조를 준용한다.

⑬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29조제6호의 투자비용을 산정할 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및 이를 재원으로 투자한 금액을 각각 기업성

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및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에서 제81조제4항제1호의 기간동안 제외한다.

제271조의20제2항제2호가목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271조의27제6항제4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271조의28제5항제2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별표 1에 따라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는 개정규정 별표1에 따른 3-15-1의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별표 1에 따라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지 않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최저자기자본을 80억원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120억원으로 적용한다.

< 별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

(단위: 억원)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자기 자본
1-1-1	투자매매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0
1-1-2	투자매매업	증권	전문투자자	250
1-11-1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
1-11-2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100
1-111-1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75
1-111-2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전문투자자	37.5
1-12-1	투자매매업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0
1-12-2	투자매매업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125
1-13-1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1-13-2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25
11-1-1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
11-1-2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증권	전문투자자	100
11-11-1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80
11-11-2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40
11-111-1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0
11-111-2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 수채증권	전문투자자	15
11-112-1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사채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11-112-2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사채권	전문투자자	20
11-12-1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11-12-2	투자매매업 (인수 업은 제외한다)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50

11-13-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11-13-2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10
11r-1r-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12-112-1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	사채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12-112-2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	사채권	전문투자자	30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1-2-2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전문투자자	50
1-21-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1-21-2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900
1-3-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450
1-31-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50
1-31-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25
1-32-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50
1-32-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25
1-321-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80
1-321-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90
1a-1-2	투자매매업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제7조의3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투자자	300
1a-4-2	투자매매업	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투자자	150
2-1-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40

			전문투자자	
2-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20
2r-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5
2l-1-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l-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5
2-11-1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1-2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5
2-12-1	투자중개업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2-2	투자중개업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5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3-2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5
2-14-1	투자중개업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4-2	투자중개업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은 제 외한다)	전문투자자	5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2-2-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전문투자자	10
2-21-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21-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5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2-3-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50
2-31-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2-31-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주권을 기초자 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2-32-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주권 외의 것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2-32-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주권 외의 것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2-321-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통화·이자율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2-321-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10
2a-1-2	투자중개업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제7조의3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투자자	200
2a-4-2	투자중개업	제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투자자	100
2o-12-1	투자중개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2o-12-2	투자중개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전문투자자	30
2o-14-1	투자중개업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2o-14-2	투자중개업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전문투자자	30
2i-11-2i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30
3-1-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20
3-11-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1호·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3-12-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3-13-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3-15-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4-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0
4-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125
4-1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30
4-1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65
4-12-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20
4-12-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전문투자자	60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4-12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4-12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50

비고

1. 제7조제1항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1-1-1 또는 1-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1-3-1 또는 1-3-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1-11-1, 1-11-2, 1-111-1, 1-111-2, 1-12-1, 1-12-2, 1-13-1, 1-13-2, 11-11-1, 11-11-2, 11-111-1, 11-111-2, 11-112-1, 11-112-2, 11-12-1, 11-12-2, 11-13-1, 11-13-2, 12-112-1, 12-112-2, 2-11-1, 2-11-2, 2-12-1, 2-12-2, 2-13-1, 2-13-2 및 2i-11-2i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한다.
3. 11r-1r-1은 제181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만 해당한다.
4. 2r-1-2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제7조 제4항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5. 1a-1-2, 1a-4-2, 2a-1-2 및 2a-4-2는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6. 2i-11-2i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7. 2-1-1 및 2-1-2는 법 제78조, 이 영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고, 2-11-1 및 2-11-2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며, 2-12-1 및 2-12-2는 법 제78조 및 이 영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고, 2-14-1 및 2-14-2는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
8.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

우에는 11-13-1 및 11-13-2의 최저자기자본은 해당 최저자기자본의 2분의 1로 한다.

9.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에 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0. 삭제 <2015.10.23.>

11. 삭제 <2015.10.23.>

1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3. 1a-1-2, 1a-4-2, 2a-1-2 및 2a-4-2의 투자자의 유형은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채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4. 법 제249조의3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자가 3-1-1, 3-11-1, 3-12-1, 3-13-1, 3-15-1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 표에 따른 자기자본은 이 표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에서 10억원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5. 법 제103조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무는 4-121-1 및 4-12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6. 2l-1-1 및 2l-1-2는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증권의 대차거래를 단순중개(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7. 2o-12-1, 2o-12-2, 2o-14-1 및 2o-14-2는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① ·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①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	③ -----			
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9인	-----			
을 말한다. 이 경우 49인을 계산	-----.			
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	-----			
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	-----			
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 · 특	-----			
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	-----			
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	-----			
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	-----			
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	-----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	-----			
모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			
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			
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	-----			
2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의	-----			
수를 더해야 한다.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이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
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
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변
경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
점, 그 밖의 영업소가 제1
항에 따른 같은 외국 금융
투자업자의 국내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제19조의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
점, 그 밖의 영업소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최종모회사(이하
“최종모회사”라 한다)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지주회사(외국 법령
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 변 경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 업자의 국내법인: 외국 금융투 자업자의 <u>국내법인이 같은 외 국 금융투자업자의</u>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 변경되는 경우 ③ 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투 자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법 제 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u>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u> <u>이하 같다)의 국내법인으</u> <u>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u> <u>경 후에 외국 금융투자업</u> <u>자 또는 외국 지주회사가</u> <u>국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u> <u>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u> <u>경우로 한정한다.</u> 나. ----- ----- <u>최종</u> <u>모회사</u>----- ----- ----- ----- ----- 2. ----- ----- ----- <u>국내법인이 같은 외</u> <u>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최종모</u> <u>회사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u> <u>자</u>----- ③ ----- ----- ----- -----
---	--

의 인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3. 법 제12조제2항제6호. 다만,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은 제외한다.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① (생략)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 대출

4. ~ 9. (생략)

③ (생략)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3. -----.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의 조직형태 변경이 아닌 -----.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83조제4항제1호-----
--

4.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

-----.

1.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아목부터 타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그 집합투자규약에 해당 내용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 타. (생략)

<신설>

1의2. ~ 8의5. (생략)

<신설>

1. -----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1의2. ~ 8의5. (현행과 같음)

8의6.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적용할 때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23에 따

③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

③ _____

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④ 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1년

-----.

-----.

1. ~ 3. (현행과 같음)

4.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각 목의 사유로 법 제81조제1항 제3호나목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된 경우: 잔여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가.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평가가격이 변동한 경우

나.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자산을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기간 중인 경우

④ -----

-----.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기업

2. · 3. (생략)

<신설>

성장집합투자기구 : 1년

2. · 3. (현행과 같음)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의 자산운용의 제한 및 예외
등) ①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를 말한다.

1.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사유

2. 시장상황에 따라 제81조제4
항제1호의 기간 내 제241조의
2제1항의 투자비율을 충족하
기 위해 주투자대상기업에 추
가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제9
항의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
한 경우

3.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
가 취득 없이 법 제81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비율을 위반하게 된 경우

②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2.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 제4항의 투자한도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제9항의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2년

3.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자산을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기간 중인 경우: 잔여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③ 법 제8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

는 조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비상장법인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다.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

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스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나. 법 제379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으로서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투자일 전날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한다)이 2천억원 이하인 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으로서 투자를 완료한 것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나.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라.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투자조합

마. 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4. 그 밖에 원활한 자금공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

④ 법 제8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⑤ 법 제8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법 제81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⑦ 법 제81조제5항제4호마목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기관”이란 제106조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을 말한다.

⑧ 법 제81조제5항제4호바목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
증서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

3.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등급인 금융기관의 발행어음

4.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인 거래상대방과의 환매조건부매수

⑨ 법 제81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평가 결과를 기초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투자심의위원회가 성장가능성,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2호 각 목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외부평가 결과 없이 평가할 수 있다.

⑩ 법 제81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3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 ③ (생략)
 ④ 법 제8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신설>

출자지분 및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투자한도 또는 제8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전 대여 한도 및 기준을 회피하는 행위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조합 등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조합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조합 등의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3조제4항제1호-----

 --.

⑤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⑥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 2. (생략)

3.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목적·한도 등을 포함한다)을 정하고 있을 것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법 제83조제4항제1호-----

나. (현행과 같음)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생략)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 ----- ----- -----.
1. <u>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u>	1. <u>법 제83조제4항제1호</u>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략)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은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외국 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u>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그 외국 지주회사의 자회사(외국 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⑤ ----- ----- ----- ----- ----- ----- <u>지주회사</u> ----- ----- ----- ----- ----- ----- -----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⑥ ~ ⑨ (생략)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가. ~ 다. (생략)

라.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마. ~ 사. (생략)

2. (생략)

②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① -----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법 제83조제4항제1호-----

마. ~ 사.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

구) ① 법 제22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제81조의2제3항제1호·제2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금전 대여

2. 제81조의2제3항제1호·제2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매입

3. 제8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조합 등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증권(채무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

③ 제1항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투자금액은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포함한다.

1. 제81조의2제3항제2호나목의 법인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투

자

2. 제81조의2제3항제3호 · 제4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합 등에 대한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

④ 법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⑤ 법 제229조의2제1항제3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은 5년 이상을 말한다.

⑥ 법 제229조의2제1항제4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은 300억원을 말한다.

⑦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
00분의 5를 말한다. 다만, 기업
성장집합투자기구의 모집가액
이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한하여 100분의 1을
말한다.

⑧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긴 기간
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한다.

1. 5년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⑨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60조제1항의 방법을 말한다.

⑩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제260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에 한 번 이상 해야 한다.

⑪ 기업성장집합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기업성장집합투자회사(각각 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발생일의 다음 날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자산(조합 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내
역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조합
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를 포
함한다)에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

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주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금전을
대여한 경우 그 사실

⑫ 법 제2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
로 설정·설립된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가 제4항의 기간 내에
그 모집가액이 제6항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업성장집
합투자기구는 해지·해산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해지·해산의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법 제192조 및 법 제202조를 준용한다.

⑬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29조제6호의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및 이를 재원으로 투자한 금액을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및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에서 제81조제4항제1호의 기간동안 제외한다.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1. (생략)
2. 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것 가. <u>법 제83조제4항</u>에 따른 단기대출 나. ~ 라. (생략) 3. ~ 5. (생략) ③ ~ ⑥ (생략)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 ⑤ (생략) ⑥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 기구는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남은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1. ~ 3. (생략) 4. <u>법 제83조제4항</u>에 따른 단기 대출 5. ~ 7. (생략) ⑦ ~ ⑩ (생략) 제271조의28(창업·벤처전문 사 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 례) ① ~ ④ (생략) ⑤ 법 제249조의23제1항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 기구(이하 “창업·벤처전문사	----- 가. <u>법 제83조제4항제1호</u>---- ----- 나. ~ 라.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83조제4항제1호</u>----- -- 5. ~ 7. (현행과 같음)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271조의28(창업·벤처전문 사 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 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생략) 2. <u>법 제83조제4항</u>에 따른 단기대출 3. ~ 6. (생략) ⑥ ~ ⑧ (생략)	----- ----- ----- ----- -----.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83조제4항제1호</u>----- -- 3. ~ 6.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연 락 처	(02) 2100 - 2664